

의안번호	제 418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349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6 월 29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18
----------	-----

제출연월일 : 2016년 6 월 29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 (제 정) 1995-03-31 조례 제 2185호
- (전문개정) 2007-08-10 조례 제 3022호
- (일부개정) 2010-11-05 조례 제 3292호
- (일부개정) 2013-03-29 조례 제 3543호
-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 3687호
- (일부개정) 2014-10-31 조례 제 37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87번지길 10-2(울량동 877)에 둔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제품 및 농·축·수산물 등의 전시·판매 및 이를 위한 매장 제공
2.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전시·판매행사 개최 등 판촉·홍보
4.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5. 농촌특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
6. 기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5>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 특산단지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생활필수품
(단, 생활필수품의 판 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4.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
(단,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 또는 도내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 4. 삭제 <2014. 10. 31>

제8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특산 단지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전시판매사용자의 운영상태·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요율의 적용시한) 이 조례 제8조의 사용요율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 8. 10 조례 제3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 11. 5 조례 제3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9 조례 제3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단체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1 조례 제3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